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참전군인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의 수수료 감면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촉진과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수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증명등의 수수료 감면대상의 범위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및 가족,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군인중 사하구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의 수수료를 추가함 (안 제8조제1항 제2호내지 제4호)

3. 관련법령 및 조례

가. 장애인복지법제27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조 (정부의 시책) 및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다.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제4조 (국가등의 책무)

라.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제8조 (수수료의 감면등)

4. 검토의견

- 이번 조례 개정안은 부산지방보훈청과 장애인단체등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보장,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 장애인의 자립 촉진을 위한 경제적부담 경감을 위해서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징수 면제 요청에 따라 관련조항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 조례 개정시 연간 13,209천원의 세수감소는 예상되나 이미 감면 시행중인 다른구(11개구)와의 형편성을 유지하고 국가유공자, 참전 군인등에 대한 예우 및 장애인의 자립 촉진을 위해서는 세제상의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개정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함.

2002. 5.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삼림